

●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-408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을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·표시 고시하고,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·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
 - 4-tert-부틸피리딘 등 45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(고유번호 2020-1-1001란 부터 2020-1-1045란까지 신설)
- 나.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
 - 기존 유독물질 11종(“97-1-244”란, “2003-1-537”란, “2006-1-556”란, “2006-1-557”란, “2006-1-558”란, “2017-1-761”란, “2018-1-832”란, “2018-1-844”란, “2019-1-899”란, “2019-1-913”란, “2020-1-997”란) 및 제한물질 1종(고유번호 “06-5-1”란)의 분류표시 추가·변경

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0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(위해성평가연구과, 전화 032-560-7245,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본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www.nier.go.kr) 내 「법령정보-행정예고」에 게재되어 있음

●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-133호

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폐지에 대해 「항로표지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일

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

업종 및 등록번호	상 호	대표자	영업 소재지	등록폐지일	사유
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목6호	(주)에스에스마 린	박우람	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42번길 22-44	2020.08.27.	경영악화로 인한 면허 반납